

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(대안) 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5년 단위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, 매년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실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게 함(안 제5조 및 제6조).
- 대통령 소속으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산업통상부 소속으로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을 설치함(안 제9조 및 제10조).
- 산업통상부장관이 반도체산업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게 함(안 제11조).
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반도체클러스터 관련 산업기반시설을 조성·지원하고, 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원하도록 함(안 제14조).
- 정부가 연구개발·실증·안전관리 및 기반시설 구축 등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혁신발전을 지원하도록 함(안 제17조).
- 정부가 전력망·용수망·도로망 등 반도체산업과 관련한 산업기반시설을 설치·확충하도록 함(안 제18조).
- 반도체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 등이 관련 목적 달성을 위해 필

요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규제 개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3조).

- 반도체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 조성 등과 관련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우선 선정과 면제절차를 규정함(안 제24조).
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에 대하여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제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1조).
- 산업통상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3조).
-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36년 12월 31일까지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함(안 제35조 및 부칙 제3조).

II. 검토의견

- 제정안은 ① 안 제15조제4항 및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국유지에 대한 대부료·사용료 및 임대료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바, 「국유재산특례제한법」¹⁾의 개정, ② 안 제15조제6항 및 제31조에서 세제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바, 「조세특례제한법」²⁾,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³⁾의 개정 필요하다고 보임. 또한, ③ 안 제35조는

1) 「국유재산특례제한법」 제4조(국유재산특례의 제한) ①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.

② 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.

③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 별표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별표에 따른다.

2)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3조(조세특례의 제한) ① 이 법, 「국세기본법」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.

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,
「국가재정법」⁴⁾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.

○ 그 밖에 제정안의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, 체계정합성을 고려한 인·허가 의제 사항의 정비⁵⁾, 정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위임입법 규정 신설⁶⁾, 인용조문 명확화⁷⁾ 및 「정부조직법」 시행예정 사항⁸⁾ 등을 반영하기 위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,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
- 3)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3조(지방세 특례의 제한) ① 이 법, 「지방세기본법」, 「지방세징수법」, 「지방세법」, 「조세특례제한법」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「지방세법」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.
- 4) 「국가재정법」 제4조(회계구분) ① 국가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.
③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,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,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하되, 별표 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.
- 5) 안 제26조는 이 법에 따른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인·허가 등이 의제되는 것으로 규정하며, 그 대상을 각 호로 열거하고 있음. 다만, 안 같은 조 제5호는 “그 밖에 반도체클러스터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을 인·허가 의제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, 이러한 규정은 대통령령을 통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부여되는 인·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법률의 체계정합성을 고려할 때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, 유사 입법례를 찾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비될 필요가 있음.
- 6) 안 제29조에서는 정부가 국내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을 촉진하기 위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, 안 제2조제1호가목은 시스템반도체를 비메모리반도체의 하부 항목으로 단순하게 정의하고 있을 뿐이므로,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고시로 이 법 적용 대상인 비메모리반도체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.
- 7) 안 제30조제4항은 반도체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 기준 등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한 「출입국관리법」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, 제정안에는 특례 적용 대상 조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유사 입법례인 「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」 제30조를 참조하여 문언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.
「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」 제30조(우수 해외인재의 입국 및 체류에 대한 특례) ① 법무부장관은 「출입국관리법」 제8조, 제10조,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에도 불구하고 첨단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.
- 8) 2026. 1. 2. 시행 예정인 「정부조직법」은 종전 기획재정부를 같은 법 제23조의 기획예산처와 제30조의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있음.
「정부조직법」(법률 제21065호, 시행 2026. 1. 2.) 제23조(기획예산처) ①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, 재정정책의 수립, 예산·기금의 편성·집행·성과관리, 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예산처를 둔다.
제30조(재정경제부)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경제정책의 수립·총괄·조정, 화폐·외환·국고·정부회계·내국세제·관세·국제금융, 공공기관 관리,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.

Ⅲ. 관계 기관 의견

- 행정안전부는 안 제9조에 따른 “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”가 「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위원회가 아닌 위원회(“자문위원회등”)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11조제2항⁹⁾에 따라 5년 이내의 존속기간을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입장임.
- 기획재정부는 안 제15조제6항 및 제31조에 따른 세제지원과 관련하여 세법이 아닌 개별법에서 이와 같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3조¹⁰⁾의 취지와 상충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.

(전문위원 박 혜 진)

-
- 9) 「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(위원회의 설치요건) ① 「정부조직법」 제5조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(이하 “행정위원회”라 한다)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1.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
 2.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
 3. 기존 행정기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(獨自性)이 있을 것
 4. 업무가 계속성·상시성(常時性)이 있을 것
- ② 행정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(이하 “자문위원회등”이라 한다)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- 제11조(위원회의 존속기한) ② 행정기관의 장은 자문위원회등을 설치할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존속기한을 정하여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- 10)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3조(조세특례의 제한) ① 이 법, 「국세기본법」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.